성주군 참외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성주군수

2. 제정이유

○ 세계의 명물 성주참외와 지역의 우수한 문화와 역사적 전통을 선양하고 널리 알려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성주참외축제의 지속적인 지원과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가. 성주참외축제 추진위원회 구성 및 기능(안 제2조, 제3조, 제6조)

1) 인원 : 20명 내외(당연직 5, 위촉직 15)

2) 임기 : 2년(연임 가능)

3) 대상 : 문화예술전문가 및 사회봉사단체 대표, 관광, 예술 등 축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등

4) 기능 : 축제의 프로그램 개발 및 참외축제 추진계획 심의·확정 등

나. 성주참외축제 사무국 설치(안 제5조)

1) 인원 : 2명(사무국장 1, 직원 1)

2) 기능

○ 성주참외축제 세부추진계획 수립

○ 예산의 집행 및 결산

○ 그 밖의 축제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

다. 성주참외축제의 평가 및 결산(안 제 19조)

○ 평가 및 결산 : 축제행사 종료 후 60일 이내

라. 성주참외축제행사 지원(안 제 20조)

○ 축제와 관련된 연구용역조사 및 행사개최에 필요한 경비 지원

4. 관련법령

○ 「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」

○ 「성주군 보조금 관리 조례」

5. 검토의견

☐ 제출자, 개정이유, 주요내용, 관련법령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.

☐ 본 제정 조례안은

○ 세계의 명물인 성주참외와 우리군의 우수한 문화와 역사적 전통을 널리 알리고, 아울러 우리군의 대표축제로 육성·발전시켜 지역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며,

○ 성주참외축제의 지속적인 지원과 발전을 위하고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

○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 규정(“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·권고·건의·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·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은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”)에 의거 본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.

☐ 주요내용은,

○ 조례안의 구성은 **전문21조와 부칙**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

○ 안 제2조, 제3조, 제6조에서는

■ 성주참외축제 추진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명시하였고,

- 인원 : 20명 내외(당연직 5, 위촉직 15)
- 임기 : 2년(연임 가능)
- 대상 : 문화예술전문가 등 축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
- 기능 : 축제의 프로그램 개발 및 참외축제 추진계획 심의·확정 등

○ 안 제5조에서는

■ 성주참외축제 사무국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

- 인원 : 2명(사무국장 1, 직원 1)
- 기능 : 축제 세부추진계획 수립, 예산의 집행 및 결산 등
- 필요에 따라 관계공무원을 사무국에 파견 근무
-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인건비 지원

○ 안 제16조에서는

■ 지출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출원을 축제담당과장으로 하되, 사무국 설치 시 사무국장으로 임명토록 하였고,

○ 안 제19조에서는

■ 성주참외축제의 평가 및 결산결과를 행사 종료 후 60일 이내에 제출토록 하였으며,

○ 안 제20조에서는

■ 축제와 관련된 연구용역조사 및 행사개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□ **축제 등 행사성 경비의 경우**

○ 민간이 행사를 **①주최**하고, 민간이(전문용역회사 포함) **②주관**하는 행사에 대한 예산은 **③「민간행사보조(307-04)」**과목에 편성하여야 하며,**(2009년도 우리군 예산 편성)**

① 주최 : 행사의 개최여부, 기본계획 수립 등 행사를 기획하여 최종 결정하고 이에 따라 책임을 지는 것 **② 주관** : 행사의 홍보·진행 등 세부일정을 짜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 **③ 민간행사보조(307-04)** : 민간이 추진하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■ 단체운영비(사무실 임대료, 상근직원 인건비 등) 지원 불가 ■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집행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예산편성 금지 ※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110쪽

○ 자치단체가 주최하고 자치단체 또는 민간(전문용역회사 포함)이 주관하는 행사에 대한 예산은 경비의 성질에 따라 **①「행사운영비(201-03)」, ②「행사관련 시설비(401-04)」** 등

○ 적정한 과목에 합리적인 산출기준에 따라 편성하여 회계 관련 법령에서 정한 원가계산, 입찰공고, 계약체결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경비집행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① **행사운영비(201-03)**

■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

- 초청장·홍보유인물·현수막·상패제작 등 행사개최에 따른 각종 일반수용비
-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등

■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 중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·다양한 행사의 경우 민간위탁 가능

- 다만, 민간위탁관련 예산은 합리적인 산출기준에 따라 편성, 민간위탁시 계약관련 법령준수
- 부서연찬회 관련 경비는 편성불가

※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101쪽

② **행사관련시설비(401-04)**

■ 행사장 각종시설 및 장치 등

- 행사개최를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 등으로 임시적·일회성 시설물 설치·구축경비

■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 중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·다양한 행사의 경우 민간위탁 가능. 다만, 민간위탁 관련 예산은 합리적인 산출기준에 따라 편성하고, 민간위탁시 계약관련 법령준수

※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115쪽

□ 상기 내용과 같이 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축제 등에 대하여는 민간에게 보조금을 주어 행사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자치단체가 **「행사운영비」**로 편성하여 직접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

□ **결론적으로,**

○ **본 제정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** 예산편성과목인 **「민간행사보조」** 취지에 맞게 실질적으로 민간이 주최·주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,

○ 또한 축제 등 행사성 경비를 **「민간행사보조」**에 편성하여 회계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민간이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회계질서 문란 등으로 예산낭비 결과를 초래하여 상부기관의 감사 시에 지적을 많이 받고 있어 지도·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,

○ 또한 작금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금년도에 편성된 참외축제 관련예산이 회계 관련법령을 준수하고, 사업목적 및 성격에 맞게 집행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